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30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941 취득세환불

원 고 A

피 고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21. 1. 14.

판 결 선 고 2021. 2. 4.

주 문

1. 피고가 2020.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redacted]구 B 일원 193.066.3㎡(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는 2007년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피고는 2009. 11. 6.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인 [redacted]공사가 이 사건 사업구역을 전부 수용하여 공동주택 등을 신축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 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사업시행기간은 인가 · 고시일부터 2014. 12. 31.까지이었다.

나. 피고는 2016. 7. 22.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를 C공사로 변경하고 공동주택 2,630세대를 추가하여 총 3,579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인가 · 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인가'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redacted]구 D 대지와 그 지상 상가 및 주택 등(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종전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그곳에서 거주 · 영업하여 왔는데, 이 사건 변경인가가 고시되기 전인 2016. 3. 2. 이 사건 사업구역 인근에 있는 [redacted]구 E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15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52,900,00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자가 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종전 부동산은 2017. 11. 16. 경 이 사건 변경인가에 기하여 사업시행자인 C공사에게 수용되었으며, 원고는 2019. 10. 25.경까지 이 사건 종전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합계 1,523,383,890원을 지급받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30

마. 원고는 2019. 11. 27. 피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이 사건 종전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부동산으로 인근 지역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니,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달라'는 취지로 지방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20. 2. 17.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시행기간 만료로 실효된 이상 이 사건 변경인가·고시일을 사업인정 고시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그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니 특례법 제73조 제1항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유를 들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7.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특례법 제73조 제1항은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에 대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취지이고,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사업시행기간이 만료하거나 그 후 변경인가가 이루어지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후 이 사건 변경인가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이 사건 종전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으로 취득한 이상 위 특례법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30

면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특례법 제73조 제1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일정한 인근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례법 제73조 제1항을 비롯한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특례법 제73조 제1항이 취득세 감면대상의 기준으로 규정하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이란 원칙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당해 부동산이 수용되는 것으로 고시된 '최초 사업인정 고시일'을 의미하므로, 그 이후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인정으로 의제되는 최초 사업시행인가 후 그 사업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있었더라도 최초 사업시행인가와 사업시행변경인가 사이에 그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변경인가의 고시일이 아니라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를 가려서 위 특례법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인지를 결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30

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특례법 제73조 제1항이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토지수용 등으로 인하여 자의에 반하여 부득이하게 생활기반이나 사업기반을 잃게 되는 거주자 또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조세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15590 판결 등 참조). 즉 공익사업에 수반한 강제적인 재산권 취득으로 부득이하게 생활기반 등을 상실하게 될 법적 불안을 겪게 되는 거주자 등이 새로운 생활기반을 마련하는 문턱을 낮춤으로써 이들이 그러한 법적 불안을 신속히 해소하도록 지원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토지수용 등을 위한 사업인정 고시가 이루어지면 그 사업구역 내 수용 대상이 되는 부동산 등이 확정되므로, 해당 부동산 등을 보유하는 거주자 등은 그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곧 생활기반 등을 잃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대비하여 당장 새로운 생활기반 내지 사업기반이 될 대체 부동산 등을 물색·취득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특례법 제73조 제1항이 사업인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대체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 사업인정으로 인하여 수용 대상 부동산 등이 확정되고 그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수용권한 등이 구체화되는 단계에 이른 이상 그에 따라 자의에 반하여 대체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생활기반 등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거주자 등에 대하여 조세정책적 지원을 할 필요성이 현실화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최초 사업인정 고시가 이루어짐으로써 거주자 등의 대체 부동산 등 취득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현실화된 이후라면 그 후 사업인정 내용이 일부 변경되더라도 그 공익사업이 계속 시행되는 한 그들에 대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30

여 취득세 감면을 통한 조세정책적 지원을 할 실질적 필요성은 감소하지 않는다.

② 특례법 제73조 제1항은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취득한 경우도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주자 등이 최초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대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였음에도 그 후 사업인정 내용이 사후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이를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취득세 감면을 예상하여 그러한 처분행위를 한 거주자 등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과세요건뿐만 아니라 조세감면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려는 조세법률주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인정으로 의제되는 최초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후 그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유효하게 수립된 사업시행계획 및 그에 기초하여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루어진 매수·수용을 비롯한 사업시행의 법적 효과가 소급적으로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두34905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6606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최초 사업시행인가에 기하여 일부 사업부지에 대한 매수·수용이 이루어진 경우 그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그 매수·수용을 비롯한 사업시행의 법적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그 매수·수용된 사업부지의 소유자 등이 최초 사업시행인가 이후 대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위 특례법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그 사업시행기간 경과 후에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이루어지고 이에 기하여 추가적인 사업부지 매수·수용이 진행된 경우 그 추가로 매수·수용된 사업부지의 소유자 등이 그 사업시행변경인가 이후에 대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이것 역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30

취득세 감면대상이 됨은 당연하다.

최초 사업시행인가에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하면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을 할 수 없는 등으로 수용권한을 일시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지만,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법적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그 후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통하여 동일한 내용의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 갔다면 그 전체적인 사업 진행에 따라 부동산 등이 매수·수용될 처지에 있는 거주자 등은 생활기반 등을 곧 상실하게 된다는 법적 불안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들의 대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위 특례법 규정에 의하여 조세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중도에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시행기간이 경과한 후 사업시행변경인가 전에 대체 부동산 등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도 취득세 감면을 통한 조세정책적 지원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위 특례법 규정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

④ 특례법 제73조 제2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은 '부재부동산 소유자', 즉 '사업인정 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일정한 인근 지역 내에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3조 제1항의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어 '사업인정 고시일'은 관계 법령에 따라 부동산 등이 매수·수용되는 것으로 고시된 '최초 사업인정 고시일'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사업인정으로 의제되는 최초 사업시행인가 후 그 사업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있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변경인가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 2. 27.자 2019두57804 판결 및 그 하급심인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30

[redacted]고등법원 2019. 10. 23. 선고 2019누4608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최초 사업인정 고시일'을 특례법 제7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면 위 특례법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최초 사업인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전체적으로 일관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2)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체 부동산으로 취득한 것은 그것이 이 사건 변경인가 전이더라도 특례법 제73조 제1항에 정한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즉 ① 원고가 소유하던 이 사건 종전 부동산은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에 의하여 수용 대상으로 포함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인 2016. 3. 2. 대체 부동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② 이 사건 변경인가는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중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고 용적률 완화에 따라 신축할 공동주택 총 세대수를 증가하는 등으로 사업내용의 상당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사업구역의 위치와 면적은 거의 차이가 없고 그곳을 전부 수용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는 전체적인 사업내용의 동일성은 유지되고 있다. ③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사업시행기간이 2014. 12. 31. 경과하였고 그로부터 약 1년 7개월 후에 이 사건 변경인가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그 사이에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등으로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시행할 필요성이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사업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계속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30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30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30

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② 법 제7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2.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 그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동)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읍·면 지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사업시행인가)

① 사업시행자(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시장·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30

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사업인정의 실효)

① 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이하 "사업인정고시"라 한다)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8조(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끝>